

#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 1. 계약 목적

본 센터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가. 서비스 제공 목적

정신적·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, 일상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.

### 나. 서비스 이행 및 삶의 질 향상

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며, 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,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.

### 다. 계약 체결 및 준수 사항

1) 이용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에 계약을 체결한다.

2)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.

3)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권자인 경우, 급여 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.

4) 제공기관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.

## 2. 계약 기간

본 센터는 이용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비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.

### 가.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계약

1)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한다.

2)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또는 인정 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될 경우,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.

나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.

## 3. 월 이용료

가.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른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.

나. 월 이용료 및 본인 부담금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본인부담금 비율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일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           |
| 기초수급권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%        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<br>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 인 자에<br>관한 고시 해당자) | 6%<br>또는<br>9% |

1)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이 변동될 경우,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)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 및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# 다. 납부 방법 및 절차

1) 이용료는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, 「다정노인복지센터」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한다.

2) 입금 기한: 청구 후 30일 이내

3) 본인 또는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, 직원이 직접 수령하고 즉시 통장에 입금한다.

4) 이후 담당 직원이 내방, 우편, 또는 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.

라. 2026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

1) 월 본인한도액(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

| 등급    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한도액(원)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

2)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

| 제공시간 | 30분이상  | 60분이상  | 90분이상  | 120분이상 | 150분이상 | 180분이상 | 210분이상 | 240분이상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수가   | 17,450 | 25,320 | 34,120 | 43,430 | 50,640 | 57,020 | 63,530 | 70,080 |

※ 단, 야간·심야·공휴일에 이용한 경우는 급여비용 증가

#### 4.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가.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해당 급여수가의 100% 금액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한다.

나. 장기요양서비스 외 비용부담(병원 이용, 외부 이동, 교통비 등)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
#### 5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

가.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

1)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

단,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·간병 제공 제외

2) 수급자의 신변 이상 발생 시 보호자 또는 기관에 즉시 연락

3)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

4)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

5) 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 발생 시 즉시 신원인수인 또는 기관에 통보

6) 급여 제공 시간 동안 수급자 주변 환경 및 집기류 청결 유지

7)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정보 누설 금지

단, 치료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예외

8) 이용 상담,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이용 및 정보 제공

9)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

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, 동거인, 보증인)의 권리

1)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
2)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

3) 서비스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

4) 수급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 권리

다. 신원인수인(보호자, 동거인, 보증인)의 의무

1) 월 이용료 납부 의무

2)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부담 요구 지양

3)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

4)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 정보 제공

가)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를 숨김없이 제공

나) 상태 변화 시 기관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 변경 동의

5)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 인적사항 제공

가)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

나) 연락처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제공

6)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

가) 서비스 개시 전 담당자 및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

나)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 이상 증세 상세 설명

이 과정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이 책임으로 한다.

담당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건강상 서비스 제공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, 신원인수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.

다)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, 가족은 분실, 파손, 부상 사고 예방 노력

## 6. 계약의 요건 및 해지

가. 계약 해지 요건

1)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

가)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

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거나,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

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, 배치된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

④ 기타,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 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) 기관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

가)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서비스 수급자 사망

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된 경우

③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판정되어, 전염성 질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 또는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④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

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준 경우

⑥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은 경우

⑦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
⑧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

나. 계약 해지 절차

1)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요청 시

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.

2) 기관 요청 시

계약 해지 요건 발생 시,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한다.

3) 서비스 수급자 사망 또는 장기 입원 시

해당 사유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,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7일 전, 기관은 14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.